

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신고 유의사항 안내

□ 배경

- 수출금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변경되는 새로운 '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'가 제정되어 '20.8.6.부터 시행

* 수출을 금지하는 기존의 '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'는 폐지('20.8.5.)

□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

-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수술용·보건용·비말차단용 마스크 또는 고용부가 인증한 방진용 마스크에 필터용으로 사용되는 멜트 블로운(MB) 부직포

□ 수출 관련 안내사항

- (수출이 가능한 MB 부직포)

-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MB 부직포

- (수출을 금지하는 MB 부직포)

① 의약외품 수술용·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용 MB 부직포

② 고용부에서 승인한 방진용 마스크 필터용 MB 부직포

③ MB가 포함된 마스크 필터용 복합부직포

- (수출 허용량)

- 산업부에서 배정한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MB 부직포 '생산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' 이내 수출가능

* 업체별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생산업체의 직전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15% 이내로 정하며, 산업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허용량 초과 수출 가능

○ (수출자)

- ①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
- ②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

○ (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시 주요항목 작성방법)

- 품명 : “MELT-BLOWN”
- 거래품명 : “NONWOVENS FOR HEALTH MASKS FILTER”
- 규격·모델 수량단위 : “KG”
- 신고인 기재란 : 「한국섬유수출입협회」에서 발급한 ‘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허용량 확인서’ “확인번호 기재”

○ (제출서류) 제정고시 제6조제4항에 따라 수출허용 입증서류 첨부

- ① 무역서류(invoice, packing list 등)
- ② ‘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허용량 확인서’
 - *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‘한국섬유수출입협회(02-6284-5012)로 문의
- ③ 산업부 사전승인 공문(수출허용량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)

○ (수출신고시 유의사항)

- ① ‘확인서(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허용량 확인서)’는 반드시 수출신고시 제출(사후 제출 불가)
- ② ‘확인서’와 수출신고 수량이 같은 경우에만 수출신고 수리
- ③ ‘확인서’는 당월에만 유효하며, 수출신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인정
- ④ ‘확인서’는 수출신고 건별로 발급 및 제출(확인서 1건으로 2건 수출신고 또는 확인서 2건으로 1건 수출신고 불가)
- ④ 샘플, 무상수출 등 수출거래 형태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‘마스크 MB 수급조정조치(수출관련)_QnA’ 참고